

#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

## 제1조(목적)

이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은 대한민국(육군3사관학교, 이하 “부대”라 한다)과 사용허가 대상자(이하 “사용인”이라 한다)와의 사이에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한다.

## 제2조(사용허가 범위)

소재지	점포명	면적(m <sup>2</sup> )	비고
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일대	생도회관 1층 (일반음식점, 스낵점)	건물 : 360.29 토지 : 225.92	사용허가일로부터 3년

## 제3조(사용허가조건의 명시)

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.

- ① 사용허가 특수조건
- ② 사용허가 협약서
- ③ 국유재산 사용허가서
- ④ 기타 상호 합의하고 서명한 문서

## 제4조(운영 및 관리)

- ① 운영일은 주5일 이상으로 하며, 운영시간은 11:00~22:00로 하나 부대와 사전 협의 후 운영일과 운영시간은 조정 하여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무단휴업을 할 수 없으며, 개인사정으로 임시휴업이 필요할 시, 사전에 “부대”의 승인을 얻은 후 5일 이내로 임시 휴업 할 수 있다.
- ③ “사용인” 또는 “부대”가 운영일,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한 후 조정할 수 있으며 부대 복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- ④ “사용인”은 “부대”의 허가조건 및 협약서 준수 여부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, 법규 위반사항 또는 허가조건 및 협약서 미 준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
- ⑤ “사용인”은 영업에 필요한 인·허가 절차 등을 “사용인” 부담으로 완료 하여야 하며,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“부대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5조(사용료의 납부)

- ① “사용인”은 연간사용료를 사용수익일(영업개시)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허가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매년 최초 사용 허가 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제1항의 연간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1회 차의 연간사용료를 사용수익(영업개시) 이전까지 선납하여야 하며,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고시 이자율을 징수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, “사용인”은 미납부 잔여회차분 사용료(이자포함)금액에 상당하는 이행지급보증서를 사용허가일까지 “부대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이행지급보증서의 지급 보증 기간의 개시일은 사용 허가일 이전이어야 하며, 그 종료일은 유상 사용허가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까지로 정한다.
- ④ “사용인”이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“부대”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차등 비율을 적용 징수한다.
- ⑤ 사용허가 갱신 시 갱신연도 기간의 사용료 산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3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다.

## 제6조(사용료의 면제 및 조정)

“사용인”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조정을 “부대”에 요청할 수 없다.

## 제7조(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제한사항)

“부대”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사용제한 사유 발생 시 허가 시설 이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, “사용인”은 이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“부대” 측에 사용료 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- ① 국가적 재난 선포, 전시예 준하는 사태 발생, 훈련·검열 등 시행
- ② 대비태세 유지, 보안 등의 사유에 의한 야간 운영시간 통제

## 제8조(투자설비 등 처리)

- ① “사용인”은 필요한 시설, 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“부대”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(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취소 또는 철회일)까지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- ② "사용인"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목적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조할 수 있으나 건물 자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 "부대"의 동의 없이는 시설물의 개조 또는 추가 설치를 할 수 없다.
- ③ 허가기간 종료, 사용허가의 취소 등 목적물 반환사유 발생 시 "사용인"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물을 허가 이전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 "사용인"이 30일 이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"부대"가 원상복구할 수 있고, 그 비용은 "사용인"이 부담한다. 해당 비용을 "사용인"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"부대"는 "사용인"이 납부한 이행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.
- ④ 영업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은 "사용인"이 부담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및 철회 시 복구 및 설비투자비용을 "부대"에 요구할 수 없다.

### 제9조(위생 및 안전관리)

- ① "사용인"은 「식품위생법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생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"사용인"은 부대 또는 행정관서의 위생·안전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, 위생 및 화재·가스 등의 안전과 관련한 "부대" 또는 관련 행정관서의 시정 요구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"사용인"은 식중독 사고, 화재사고와 같이 사용인 측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④ "사용인"은 사용허가서 발급 이전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"부대"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(허가조건 및 운영협약 위반 시 조치)

"부대"는 "사용인"이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.

- ① 1차 위반 :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내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
- ② 2차 위반 : 1차 주의 조치 관련 내용 불이행 및 기타 위반내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
- ③ 3차 위반 : 사용허가 철회

### 제11조(종업원 관리)

“사용인”이 육군3사관학교 생도회관 1층 일반음식점을 운영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“사용인”에게 있다.

### 제12조(허가기간의 갱신)

“사용인”은 허가기간 갱신을 희망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“부대” 측으로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, “부대”는 특수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사례,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부대복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“사용인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 (보안사항)

- ① “사용인” 및 “사용인”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은 「군사기밀보호법」, 「군사보안업무훈령」, 해당 부대 보안규정 및 기타 군사보안 업무에 관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, “부대”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“부대”로부터 직·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, 정보 등 (이하 “군사 관련 사항등”이라 한다)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③ “사용인”은 “부대”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, 복제, 번역,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④ 본 조에 따른 의무는 계약이 종료, 해제,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 한다.
- ⑤ “사용인”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“부대”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“사용인”은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「군사기밀 보호법」, 「국가보안법」, 「형법」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
### 제14조(여론조사에 대한 조치)

“부대”는 “사용인”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가격 및 질, 서비스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“부대”가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을 조치 요구할 시 “사용인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### 제15조(손해배상)

- ① “사용인”은 “사용인” 귀책사유로 이용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, “부대”에서 제공한 건물, 설비, 비품 등을 훼손, 망실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제16조(사고처리 및 책임)

- ① “사용인”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준하여 시설 및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,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는 “사용인”에게 책임이 있다.
- ② “사용인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및 도난사고는 “사용인”이 책임을 진다.

### 제17조(운영협약서 체결)

- ① “사용인”은 운영일, 운영시간, 공공요금 징수 등 “부대”와 별도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“부대”와 “사용인”은 필요한 경우,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운영협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.
- ③ “사용인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협약서 체결을 거부할 경우 “부대”는 사용허가를 철회하거나 “부대”가 합리적으로 정한 운영협약서를 부가할 수 있다.

### 제18조(합의 등에 관한 사항)

- ① 특수조건에서 규정한 모든 협의 또는 합의,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청약 문서와 그에 대한 승낙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청약문서에 접수를 위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은 승낙의 뜻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의 또는 합의, 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